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6조제2항제4호중 “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”을 “중고차 판매업자,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4-11조의2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.

1. 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
2.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
3.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

제7-6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실손의료보험은 영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, 그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(이하 “특약”이라고 한다)으로 구성할 것. 다만,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제7-63조제2항제2호 중 “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)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(공제전)에서 다

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할 것”을 “주계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하며, 이하 “기본형 실손의료보험”이라 한다)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(공제전)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”으로 한다.

제7-6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)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(공제전)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. 단,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.

제7-63조제2항제4호 중 “제5호에서 정하는”을 “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라목 중 “제2호”를 “제2호 및 제2호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-63조제2항제1호(전단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)·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, 제7-63조제2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, 제4-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

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-63조제2항제1호(전단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)·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·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공포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단체보험 및 해외여행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특례)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상품 및 해외여행보험상품 중 국내실손의료비보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 2017년 4월 30일까지는 제7-63조제2항제1호(전단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)·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-6조(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32조제5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손해보험대리점(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)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(다만, <u>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</u>)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</p> <p>5. 6. (생략)</p> <p>제4-11조의2(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-6조(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고차 판매업자,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5.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-11조의2(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</u></p>

⑤ (생략)

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) ① (생략)

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(이하 "실손해"라 한다)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2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%이상인 단독실손의료보험(이하 "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"이라 한다)을 판매하고 있을 것. 단, 단체보험은 제외한다.

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.

1. 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

2.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 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

3.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실손의료보험은 영 제42조의 5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, 그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(이하 "특약"이라고 한다)으로 구성할 것. 다만, 단체보험

2. 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)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(공제전)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할 것. 단,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2. 주계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하며, 이하 “기본형 실손의료보험”이라 한다)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(공제전)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의2.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)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(공제전)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. 단,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

<p>3. (생략)</p> <p>4.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<u>제5호</u>에서 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할 것(여행보험은 제외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<u>제2호</u>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%미만인 실손의료보험은 청구된 보험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<u>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</u>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----- ----- <u>제2호 및 제2호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